

교원 해외여행 내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해외여행 및 방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) ① 교원이 학기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소속대학(원)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60일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교원 해외여행계획서 1부.
2. 휴·보강계획서 1부.
3. 초청장 또는 여행관련증빙서류(사본) 1부.

② 교원이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원 해외여행신고서 1부.

③ 공무상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신청서 또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학술대회참가지원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3조(허가) ① 총장은 소속 교원의 해외여행이 연구활동, 국제학술회의참가, 학술교류협정, 본교의 공무수행 및 정부의 공무위촉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여행기간) ① 학기 중의 해외여행기간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당 2회, 통산 15일 이내로 하되, 본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. 단, 총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여행기간에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의무) ① 해외여행 후 귀국한 교원은 지체없이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복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반드시 당해 학기 중에 보강 또는 대강되어야 한다.

제6조(위반에 대한 조치) 교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규정의 개정) 본 내규의 제·개정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서식1】

해외여행 계획서

결 재	담 당	주 임	계 장	과 장	처 장	총 장

소 속		
직 위		
성 명		
여행기간		
방문국가	목적지	
	경유지	
여행 중 연락처		
여행목적		
학사업무 (성적입력, 성적정정처리, 입시 등)		

첨부서류 :

위와 같이 해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인:

(서명/날인)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

